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선별진료소 적용)

I. 의료기관 대응개요

의심환자의

-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접수 시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방문/체류 등) 확인(DUR/ITS 팝업 확인)
- ∘ 능동감시 대상자,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 확인
- 내원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
- 접수자: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 해당

Ⅱ 선별진료소 진료

- ∘ 증상 및 징후 확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있는지 확인
- 폐렴 의심증상 시 흉부방사선 촬영, 폐렴여부 확인
- ◦노춬력 확인
- 증상 발생 전 14일 이내에
-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여행(체류) 하였는지 확인(문진, DUR/ITS 팝업 확인 등)
- * 중국을 방문하였는지 확인
- 의심환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 후 다른 환자와 1미터 이상 거리 유지
-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긴팔 가운, 장갑, 눈보호구, 호흡기 비밀생성 처치 시 Level D 보호구 착용)

♥ 해당

Ⅲ 신고대상 환자 격리 및 보건소 신고

○ 신고대상 환자(의사환자)를 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이 없는 경우) 독 립된 공간으로 환자 이동

※ 신고대상 환자범위

IV

V

- ① 중국 유행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가증상가침 등이 나타난 자
-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 추후 변경 가능,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 ②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

신고대상 환자 역학조사 및 사례 분류

- ※ 역학조사 및 사례 분류는 해당 지역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주관 으로 시행
- ◦신고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사례 분류 등

♥ 의사환자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

[의료기관] 상기도, 하기도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 [보건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 검체 채취 인력: Level D 보호구 착용

₩ 예

VI 환경 소독

환경 소급 ○환자 이송 후 의료기관 환경 소독 실시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사(또는 침상) 등
- 환경 소독 인력: Level D 보호구 착용

해당 없음

일반진료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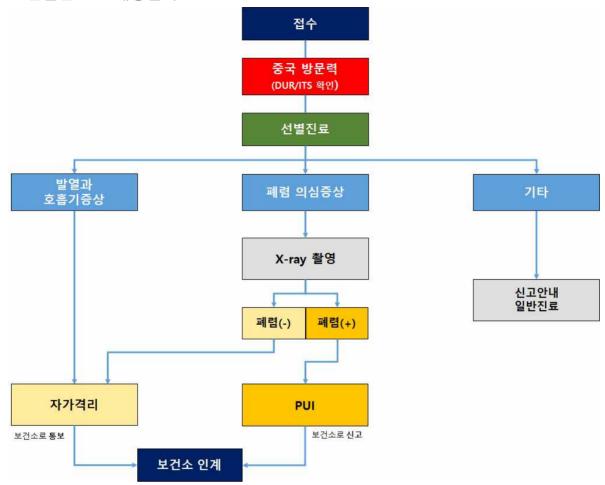
일반진료

해당 없음

일반진료 (보건소에서 보건교육, 신

고 안내, 능동감시 교육 등)

< 선별진료소 대응절차>



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신고 대상 >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 확진환자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 의료인 감염예방 수칙

- 환자 진료 전·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
- **의사환자 등 진료 시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장갑 및 1회용 가운, 고글**(또는 안면부 가리개)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
-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

Ⅲ.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 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 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을 통한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0 1.4-2.5로 추정(WHO, 2020.1.23.기준)
- (잠복기)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 어린이, 노인, 면역저하자, 해열제 복용한 환자 등 <u>발열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u>를 고려한 임상적 판단 필요
- **(위중도)** 폐렴 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치명률은 약 **4**% 수준(WHO, 557명 중 17명 사망기준, 참고로 국내 MERS 당시 치명률 약 20%)
 -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표. 2019-nCoV, MERS-CoV, SARS-CoV 환자의 임상적 특성 비교 >

	2019-nCoV	MERS-CoV	SARS-Cov			
질병 특성						
발생시기	2019년 12월	2012년 6월	2002년 11월			
발생지역	중국 우한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중국 광둥성			
환자평균나이(범위)	49세(21세-76세)	56세(14세-94세)	39.9세(1세-91세)			
성비(남:여)	2.7:1	3.3:1	1:1.25			
확진사례수	835	2494	8096			
치명률	25(2.9%)	858(37%)	744(10%)			
의료진 감염률	16	9.8%	23.1%			
임상증상						
발열	40(98%)	98%	99-100%			
마른기침	31(76%)	47%	29-75%			
호흡곤란	22(55%)	72%	40-42%			
설사	1(3%)	26%	20-25%			
인후통	인후통 0		13-25%			
기계호흡이 필요한 경우	9.8%	80%	14-20%			

<출처: www.thelancet.com Published online January 24, 2020 http://doi.org/10/1016/S0140-6736(20)30185-9 >

부록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방법

('20.01.24.(금) 기준)

□ 검체 종류

- 하기도 및 상기도 검체* 2종류 검체 필수 채취
 -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 표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1 하기도	ㅎL기 ㄷ	. 7L2U	·(용기) 멸균 50㎖ 튜브				
	'기대	·(검체량) 3째 이상					
2	2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비인두도말물	구인두 도말물 동시 채취					
3 기타	·혈액	·(용기) SST 5~10ml, 영아 1ml)					
	기나	·대변 / 소변	·(용기) 멸균용기				

□ 검체 채취 방법

※ 검체 채취 시,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가운, 고글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함

○ 하기도 검체 채취 방법

- 가래(Sputum) :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 기관지 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 : 국소 병변(focal lesion)이 관찰되는 폐엽(lobe)에서 호흡기내과 전문의 주관으로 채취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유도하여 가래 채취



4. 완전 밀봉 (4°C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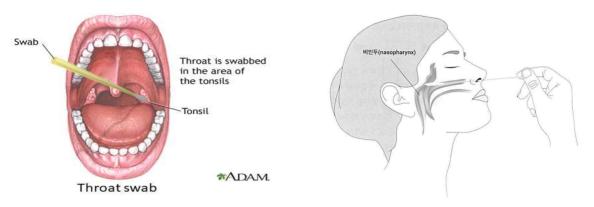
그림1. 가래 채취 방법

○ 상기도 검체 채취 방법

-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가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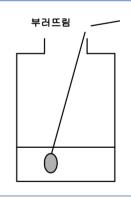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그림2. 상기도 채취 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한다.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한다.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한다.
- 검사의뢰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한다.(4℃ 유지)



□ 검체 포장

○ 검체 포장 방법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표 2. 3중 포장용기 예시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 검체 운송

- 검체운송 담당 : 의사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
 - * 검체 운송 담당자는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제6판)'을 참조로 작성
- 검체 종류는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 1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3.>

			처 리 기 간								
() 검체 시험의뢰서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기관 _	이르기기머				담당자 성명	명					
	의료기관명				담당자 연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별	
	발병일				검체채취일	널					
검체	종류(수량)										
시	험항목										
	채취 구분 또는 2차)										
담당의사소전	<u></u> 결서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첨부자료1. 검사대상물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개)]											
처리 절차											
의뢰서 직	★ -	접수	→	시험ㆍ김	실사 →		결재	→	성적	덕서 팀	발급
의뢰인	의뢰인 질병관리본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